

광주고등법원(제주)
제 주 제 1 민 사 부
인 낙 조 서

사 건 (제주)201 19 배당이의
(원심사건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

원고(피항소인) 양
서울 강남구 논현로 46 , 102호 (신사동, 빌라)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

피고(항소인) 주식회사 호텔
시 상복구 광덕산2로 409호(월곡동)
송달장소: 인천 서구 고산후로161번길 101동 203 당동,
대표이사 김

피고(항소인)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에셋대부
서울 강남구 논현로 7층 734호(논현동,
대표이사 조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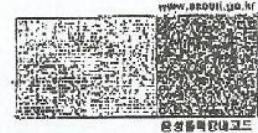
재판장 원사 이 채 기 일 : 2018. 2. 14:10
판 사 이 장 소 : 제주지방법원 제501호 법
판 사 이 공개 여부 : 공 개
법원 사무관 강

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

원고(피항소인,부대항소인)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각 출석

피고(항소인,부대피항소인) 대표이사 김 출석

피고(항소인,부대피항소인)의 보조참가인 및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



형기

각 불출석

피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였다.

청 구 의 표 시

주위적 청구취지

제주지방법원 2014년경1490, 2014년경3346(증복)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. 4. 29.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0,000,000원을 0원으로,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0,000,000원으로 각 경정한다.

예비적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2014년경1490, 2014년경3346(증복)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. 4. 29.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0,000,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, 대한민국(소관:제주지방법원)에 대하여 그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이행하라.

청구원인

원고는 주위적으로 제주지방법원 2014년경1490, 2014년경3346(증복)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에 따른 배당표 경정을 구하고, 예비적으로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의 배당금지급채권은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임.

법원 사무관 강



재판장 판사 이





정본입니다.

2018. 3.

광주고등법원(제주)

법원사무관 강기훈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
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
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